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5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.

발 의 자:김영호·강병원·김민기

김영주 · 김종민 · 김홍걸

송영길 · 신정훈 · 안민석

이장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1호).

법률 제 호

#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1호 중 "기소중지"를 "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	제13조(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
• 제한) ① 외교부장관은 다	• 제한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	
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	
있다.	<b></b>
1. 장기 2년 이상의 형(形)에	1
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	
(起訴)되어 있는 사람 또는	
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	
는 죄로 인하여 <u>기소중지</u> 되거	<u>기소중지 또</u>
나 체포영장 • 구속영장이	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
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	
사람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생 략)